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치유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‘치유농업’을 추가하여 치유농업 전공 학과의 신설·확대 등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완화하고, 치유농업 관련 석사·박사 학위 취득자를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며,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“치유농업”을 추가하여 치유농업 전공 학과의 신설·확대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또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치유농업 관련 업무, 종사경력, 석·박사 학위논문 및 관련학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자

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응시자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1급 치유농업사 중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“5년 이상”에서 “3년 이상”으로 완화

나. 다음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.

바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같은 별표의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“치유농업”을 추가

라.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치유농업 관련 업무 여부, 종사경력, 석·박사 학위논문 및 관련학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는 「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응시자격 판단 기준을 명확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가) 중 “5년 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별표 1 제1호가목1)의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,

같은 호 아목 및 자목 중 “관광”을 “관광, 치유농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에 다음의 항목을 신설한다.

1의2.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중 “치유농업 관련업무, 종사경력, 석·박사 논문 및 관련학과”에 대한 적합 여부는

「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2항제1호에

따른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1] 1. 응시자격 가. 1급 치유농업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)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(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, 이하 “치유농업관련업무”라 한다)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(신설) (신설)	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3년----- ----- ----- ----- 바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

력이 있는 사람

바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·의료, 사회복지·상담, 평생교육·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아) -----

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·의료, 사회복지·상담, 평생교육·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자) -----

----- 관광, 치유
농업-----

아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차) -----

(신설)

1의2.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중 “치유농업 관련업무, 종사경력, 석·박사 논문 및 관련학과”에 대

한 적합 여부는 「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	
연 락 처	(063) 238 - 1022